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4-61호  
2024. 9. 27.(금)

## 차 례

### 고 시(3)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4-104호) ..... 1
- 도시관리계획(미래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24-105호) ..... 2
- 도시계획시설(미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고시 제2024-106호) ..... 6

### 공 고(4)

- 공시송달공고(회덕동(장동) 상서간 도로개설사업)(공고 제2024-969호) ..... 9
- 무연고 사망자 공고(공고 제2024-981호) ..... 10
- 2024년도 제4회 대덕구 도로관리심의회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 신청공고(공고 제2024-986호) ..... 11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988호) ..... 17

### 입 법 예 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4-993호) ..... 18

### 행 정 예 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공고 제2024-990호) ..... 27

공 략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104호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문평동 140-3, 140-4, 140-42, 140-45	대덕대로1417번길 8 (문평동)	건물신축	대덕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14,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9. 27.
비래동 110-6	비래서로9번길 81 (비래동)	건물신축	비래서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9. 27.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042-608-5306)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 도시관리계획(미래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62호(2024.05.31.)로 도시관리계획(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미래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미래어린이공원 조성)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영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 042-608-51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미래 어린이공원

#####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미래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대덕구 중리동 378-12번지	1,570.8	1,570.8	-	충남고시 제15호 (1981.04.15.)	

####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미래 어린이공원	- 시설면적 : 증) 28.6㎡ - 녹지면적 : 감) 28.6㎡	○ 공중화장실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공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분	부지면적(㎡)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570.8	1,570.8	-	27.0	27.0	-	27.0	27.0	-	
시설면적	860.1	888.7	증 28.6	27.0	27.0	-	27.0	27.0	-	
녹지면적	710.7	682.1	감 28.6	-	-	-	-	-	-	

#### 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설조서

구분	부지면적(㎡)			구성 비 (%)	건축규모(㎡)						비고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570.8	1,570.8	-	100.0	27.0	27.0	-	27.0	27.0	-	
계	860.1	888.7	증28.6	56.58	27.0	27.0	-	27.0	27.0	-	
도로 및 광장	소계	640.3	670.5	증30.2	42.69	-	-	-	-	-	
	도로	141.6	141.6	-	9.02	-	-	-	-	-	
	광장	498.7	528.9	증30.2	33.67	-	-	-	-	-	
휴양시설	-	-	-	-	-	-	-	-	-	-	
유흥시설	185.1	185.1	-	11.78	-	-	-	-	-	-	
운동시설	-	-	-	-	-	-	-	-	-	-	
편익시설	34.7	33.1	감1.6	2.11	27.0	27.0	-	27.0	27.0	-	
관리시설	-	-	-	-	-	-	-	-	-	-	
녹 지	710.7	682.1	감28.6	43.42	-	-	-	-	-	-	

마.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세부시설조사

구분	번호	시설내용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개소)		건축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1,570.8	1,570.8	-	24	24	27.0	27.0	-	27.0	27.0	-		
시설소계			860.1	888.7	증28.6	24	24	27.0	27.0	-	27.0	27.0	-		
도로 및 광장	소계	640.3	670.5	증30.2	-	-									
	도로	141.6	141.6	-	-	-									
	1-1 광장	498.7	528.9	증30.2	-	-									
휴양 시설	소계	-	-	-	6	6									
	2-가 정자	-	-	-	1	1									
	2-나 등 의자	-	-	-	4	4									
	2-다 파고라	-	-	-	1	1									
유희 시설	소계	185.1	185.1	-	1	1									
	3-1 놀이터	185.1	185.1	-	-	-									
	3-가 조합놀이대	-	-	-	1	1									
운동 시설	소계	-	-	-	5	5									
	4-가 체력단련시설	-	-	-	5	5									
편익 시설	소계	34.7	33.1	감1.6	1	1	27.0	27.0	-	27.0	27.0	-			
	5-1 화장실	34.7	33.1	감1.6	1	1	27.0	27.0	-	27.0	27.0	-			
관리 시설	소계	-	-	-	11	11									
	6-가 공원등	-	-	-	5	5									
	6-나 CCTV	-	-	-	2	2									
	6-다 공원안내판	-	-	-	2	2									
	6-라 표석	-	-	-	1	1									
	6-마 자전거거치대	-	-	-	1	1									
녹지		710.7	682.1	감28.6	-	-									

바. 도로조서(변경없음)

1) 도로결정 총괄표

구분	합계			2류			3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노선수	연장(m)	면적(m <sup>2</sup> )	
기정	5	118	141.6	-	-	-	5	118	141.6	

2) 도로 세부총괄표

등급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m <sup>2</sup>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소로	기정	3	1	1.2	15	18.0	산책로	광장 1-1	광장 1-1	
	기정	3	2	1.2	12	14.4	산책로	광장 1-1	광장 1-1	
	기정	3	3	1.2	55	66.0	산책로	광장 1-1	광장 1-1	
	기정	3	4	1.2	8	9.6	산책로	북측입구	소로3-3	
	기정	3	5	1.2	28	33.6	산책로	광장 1-1	광장 1-1	
총계	기정	합계			118	141.6				

□ 관계도면: 게재생략

끝.

## 도시계획시설(미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80호(2024.07.05.)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미래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영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 042-608-51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78-12번지 / 미래어린이공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미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미래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사업 면적: 1,570.8㎡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24. 7. ~ 2024. 12.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부조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1	대덕구	중리동	378-12	공	1,570.8	1,570.8	대전 대덕구	-	-	-	-
합 계							-	-	-	-	-

- 사. 실시계획 조서(변경)

시설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공원조성계획 시설별 결정면적 (㎡)		실시계획 인가 신청면적 (㎡)		시설물 (개소)	건축물(㎡)				비고
			기경	변경	기경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공원조성계획 결정면적	실시계획 인가 신청면적	공원조성계획 결정면적	실시계획 인가 신청면적	
총계	-	-	1,570.8	1,570.8	176.0	204.0	24	27.0	27.0	27.0	27.0	
시설 면적	계	-	860.1	888.7	176.0	204.0	24	27.0	27.0	27.0	27.0	
도로 및 광장	소	계	640.3	670.5	141.3	170.9	-	-	-	-	-	
	도로	로	141.6	141.6	-	-	-	-	-	-	-	
휴양 시설	1-1	광장	498.7	528.9	141.3	170.9	-	-	-	-	-	
	소	계	-	-	-	-	6	-	-	-	-	
	2-가	정자	-	-	-	-	1	-	-	-	-	
유취 시설	2-나	등의자	-	-	-	-	4	-	-	-	-	
	2-다	파고라	-	-	-	-	1	-	-	-	-	신설
운동 시설	소	계	185.1	185.1	-	-	1	-	-	-	-	
	3-1	어린이놀이터	185.1	185.1	-	-	-	-	-	-	-	
	3-가	조합놀이대	-	-	-	-	1	-	-	-	-	
편익	소	계	34.7	33.1	34.7	33.1	1	27.0	27.0	27.0	27.0	
	4-가	체력단련시설	-	-	-	-	5	-	-	-	-	

시설 구분	시설 번호	시설명	공원조성계획 시설별 결정면적 (㎡)		실시계획 인가 신청면적 (㎡)		시설물 (개소)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공원조성계획 결정면적	실시계획 인가 신청면적	공원조성계획 결정면적	실시계획 인가 신청면적	
시설	5-1	화 장 실	34.7	33.1	34.7	33.1	1	27.0	27.0	27.0	27.0	시설
관리 시설		소 계	-	-	-	-	11	-	-	-	-	
	6-가	공 원 등	-	-	-	-	5	-	-	-	-	
	6-나	C C T V	-	-	-	-	2	-	-	-	-	
	6-다	공 원 안 내 판	-	-	-	-	2	-	-	-	-	
	6-라	표 석	-	-	-	-	1	-	-	-	-	
	6-마	자 전 거 거 치 대	-	-	-	-	1	-	-	-	-	
녹지	소 계	-	-	-	-	-	-	-	-	-	-	
	-	녹 지	710.7	682.1	-	-	-	-	-	-	-	

아. 관계도서: 게재생략(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969호

## 회덕동(장동) 상서간 도로개설사업 공시송달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시행하는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8. 27. 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명: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2. 사업의 위치: 대덕구 장동, 상서동 일원
3.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4. 공고내용: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2024. 8. 27.)
5. 공고기간: 2024. 9. 27. ~ 2024. 10. 11.(14일)
6. 공시송달 대상자: 김동규 외 1명
7.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 042-608-5942). 끝.

##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무연고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등록기준지	발견일시 (사망일시)	발견(사망)장소	사망 원인	처리 방법
			주민등록상주소				
한영구	남	1966.12.25. (57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12	'24.9.4.(수) 22시 추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12동 806호(법동, 보람아파트)	병사	화장 후 봉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12동 806호(법동, 보람아파트)				

#### 2. 발생상황

○ 2024. 9. 4.(수) 22시 경 본인 자택(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78, 112동 806호)에서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3. 봉안기간: 30년(2024. 9. 21. ~ 2054. 9. 20.)

4. 봉안장소: 무궁화추모공원(관리번호 1001-072)

5. 공고기간: 2024. 9. 27. ~ 2024. 10. 26.

6. 연락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장애인과(☎ 042-608-4793). 끝.

## 2024년도 제4회 대덕구 도로관리심의회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 신청 공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설치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기관(업체)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의거 2024년도 제4회 대덕구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대 상)

- 도시관리계획 상 노폭 20m미만 도로 / 토지이용 도시계획(도로 폭 등) 확인
- 도시관리계획 상 도로의 보도부

#### 나. (제출기한) 2024. 9. 27.(금) ~ 10. 13.(일)까지

#### 다. (제출방법) 대전광역시 도로관리시스템(<https://vpn.daejeon.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도로관리시스템(<https://vpn.go.kr>) 관련 문의: 市 건설도로과(☎ 042-270-5913)

#### 라. (도로관리심의회 개최예정일) 2024년 11월 중(예정)

#### 마. (제출서류)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도로굴착 조정신청서, 구간별 사진, 사업계획검토 참고자료, 각종 안전관리대책,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자 의견서 등 각 1부.('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굴착구간 지하매설물 유무 확인 신청 관련 문의: 市 건설도로과(☎ 042-270-5911)

#### 바. (주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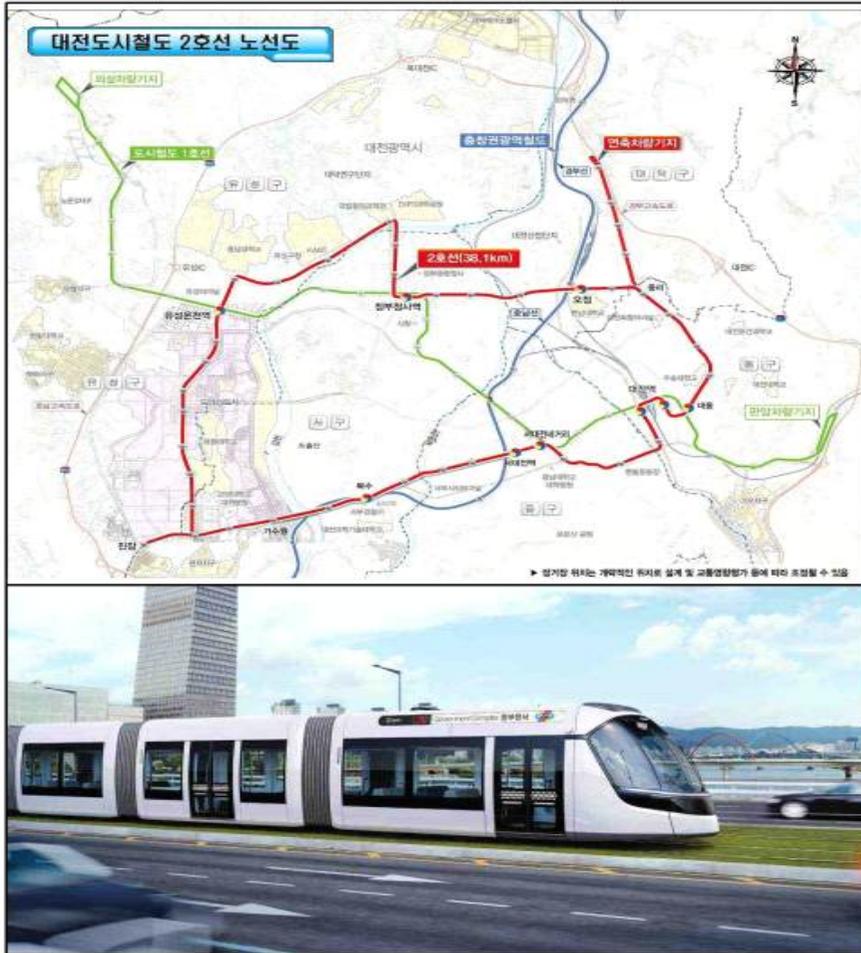
-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 **必**(임의 작성 및 확장자 변경 금지)
- 시·종점 상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표기, 현황 사진에 굴착 예정구간 표시
-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는 당해 연도 점용(굴착)허가 신청 건에만 유효하며, 당해 연도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재심의받아야 함
- 당해 연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해당 허가는 취소됨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구간 시스템 확인 및 구간 중복 시 市 트램건설과(☎ 042-270-0972) 사전협의

2024년 9월 2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도**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p>「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p>									
<b>신청내역</b>									
번호	노선명	공사명	굴착 구간	시행 부서	매설 관경	포장 종류	연장(m)	공사 기간	비고
<b>첨부</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치도면(1/5,000 현황도에 표시) 1부</li> <li>2. 설계도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대전광역시의 수치지도 1/1,000에 지하매설물의 점유위치, 점유위치표지 등을 표시한 평면도 1부</li> <li>나. 1/200축척으로 작성한 횡단면도 1부</li> </ul> </li> <li>3.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li> <li>4. 주요지하매설물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1부</li> <li>5. 교통소통대책 1부</li> <li>6. 먼지발생대책 1부</li> <li>7.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li> <li>8. 도로복구방법 1부</li> <li>9.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li> </ol>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 1. 도로굴착조정신청 조사서

① 연 번							② 굴착 목적						
③ 굴착시행자							④ 굴착 위치						
⑤ 굴착 개요	구 분	계	아스콘	콘크리트	보도 투수콘	보도 블럭	소형 고압	기타	⑥ 굴착 기간			신 청	
	연 장(m)											조 정	
	굴착폭(m)												
	면 적(m <sup>2</sup> )												
⑦ 관 리 청 현지조사 검토의견													
⑧ 위치도, 사진	【 위치도 】						【 현황 사진 】						

※ 굴착구간 전경사진 첨부

## 2. 굴착단면도

연번		굴착구간			
1. 지하매설물 현황도					
※ 굴착지역에 대한 지하매설물 현황을 표기한 도로횡단면도임 (100M간격으로 작성)					
2. 굴착계획도(도로횡단면도)					
3. 관로굴착복구단면도					
4. 유관기관 확인 (주요지하매설물에 한함)		기관명	담당자	의견	
		상수도사업본부	(인)		
		CNCITY에너지	(인)		
		한국전력공사	(인)		
		한국송유관공사	(인)		
		한국가스공사	(인)		
		KT	(인)		
		구청 건설과	(인)		
			(인)		

### 3. 각종 안전관리대책

연번	구분	구분	구분
1.	교통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방지대책		
4.	도로복구방법		
5.	도로시설물 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7.	검토자 의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988호

###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4조제5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고지문”을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 고 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9. 27. ~ 2024. 10. 11. (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토지정책과(☎042-608-5306)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 1. 지면이 부족한 경우 여러 장으로 나누어 작성  
 2. 7번의 사항은 심의기관에서 작성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3. 8. 30., 2024. 8. 27.)으로 선물의 범위 추가 및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 및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범위 상향 조정함(안 별표 1).

나.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을 신설함(안 별표 1).

다.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상품권을 신설 포함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에 대한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별표 1).

라.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별표 1).

###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감사실  
(전화 : 042-608-6032, FAX : 042-608-3812, E-mail : tax7352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감사실 담당자 김정기(전화 : 042-608-60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0조 관련)

구 분	가액 범위
1. <b>음식물:</b>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2. <b>경조사비:</b>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3. <b>선물:</b>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5만원 15만원 30만원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관계법령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② (생략)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 8. (생략)

④·⑤ (생략)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8. 27.>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 가. 금전
  -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99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앞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행정예고 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앞 노상주차장 3면 폐지(사유: 도로교통법 제32조제5항에 근거한 주·정차금지 구역에 해당) 추진에 대하여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3. 예고대상

위 치	폐지면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앞 노상공영주차장 3면	3

#### 4. 관련근거

- 가.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5항

5. 행정예고(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https://www.daedeok.go.kr>)

6. 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9. 27.(금) ~ 2024. 10. 17.(목) (21일간)

##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20)

※ 토·일·공휴일은 대덕구 당직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메일

(FAX: 042-608-3845, 메일: juyeon97@korea.kr)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마. 제출기일: 2024. 9. 27.(금) ~ 2024. 10. 17.(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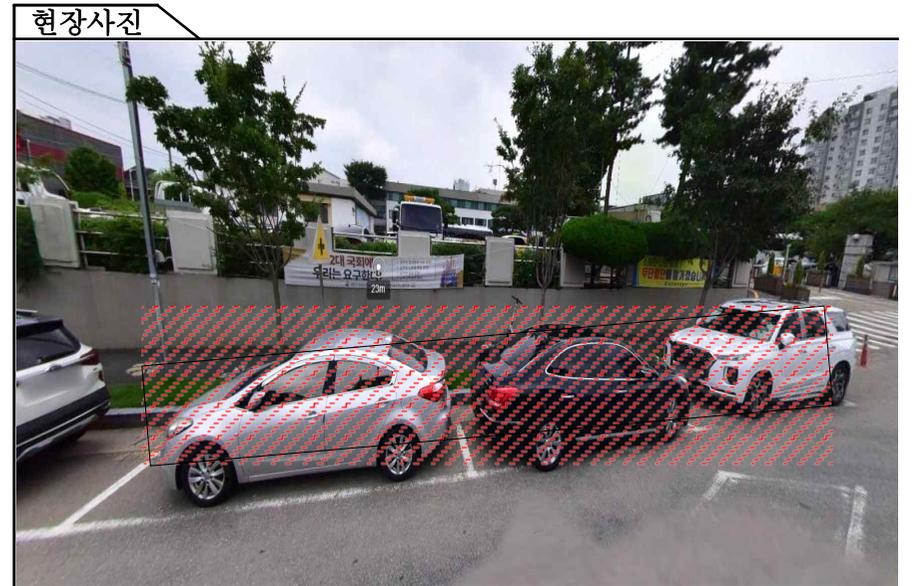
바.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5)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2] 의견제출서 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끝.